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대응방안연구

An Overview and Countermeasure Study on the Remuneration System of Public Lending Right

정 현 태(Hyun-Tae Joung)*

〈목 차〉

- | | |
|---------------------------|----------------------------------|
| I. 서론 | 3. 각국의 공공대출권 보상제도 운영현황 |
| 1. 문제제기 | III.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운영의 특징과 대응방안 |
| 2. 연구방법 | 1.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운영의 특징 |
| II.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운영의 현황분석 | 2. 도서관에서의 공정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대
응방안 |
| 1. 도서관에서의 공정사용과 공공대출권의 등장 | V. 결론 |
| 2. 공공대출권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 | |

초 록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무료대출에 대해 저작자에게 보상하는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실시를 회원국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본고는 EU 및 선진국 일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살펴보았다. 또한 기왕에 공공대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현황분석을 통해, 도서관 공정사용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저작자의 대여권을 보상하는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모색해 보았다.

주제어: 공정사용, 공공대출권, 저작권, 대여권,

Abstract

European Union has recently encouraged its member states to enforce the Public Lending right that is a remuneration system for free lending service in public libraries.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Public Lending Right System which is systematized in European Union and a few advanced countries. By analyzing the present state of many states which is running the public lending right system, this study also explores a reasonable compensation system which remunerate a copyrighter for his lending right and ensure the fair use tradition in libraries,

keyword: fair use, public lending right, copyright, lending right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보자료센터 위촉직원

• 접수일 : 2002. 11. 5 • 최초심사일 : 2002. 12. 2 • 최종심사일 : 2002. 12. 5

I. 서론

1. 문제제기

자유로운 열람과 무료대출로 특징지어지는 도서관 공정사용의 전통은 시민사회 공공적 정보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제한의 범주에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로 허용되어 왔던 민주사회의 기본제도이다. 그러나 도서관 무료대출에 대한 저작자의 대여권 보상을 법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1992년 EU의 대여권 지침’이 실시된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는 도서관 대출이용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도서관 무료원칙에 대한 입장을 지키면서 저작권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절충적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라마다 다양한 보상시스템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고는 EU 및 선진국 일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공대출권(PLR; Public Lending Right) 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제도의 기본취지와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만일의 경우 대여권 보상이 국제적 협약으로 진전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의 도서관 및 저작권 관념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왕에 공공대출권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각국의 제도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였고, 도서관 무료이용의 전통을 고수하며 저작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공구해 보았다.

본고는 EU가 저작자의 대여권에 대한 법적 보상으로 권장하고 있는 공공대출권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거나, 이를 국내에 소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대여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미진한 국내실정에서 세삼스럽게 공공대출권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을 환기하는 부수적 영향력은 본고가 의도치 않은 부정적 측면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본고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협약수준이 세계적인 동조화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럽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도서관의 무료대출에 대한 대여권 보상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해 장래의 도서관관련 저작권 대책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 보자는 의도로 집필되었다.

2. 연구방법

본고는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에 대한 현실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상황분석을 위주로 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인위적 변수설정을 조작하는 통계적 인과분석은 배제하였다. 저작권법상 도서관 공정사용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주요국 저작권법의 해당조항을 수집하였고, 공공대출권 제도관련 각국의 사법적 및 행정적 운영여건의 다양한 현황을 비

교분석하였다. 주로 문헌자료조사와 인터넷검색의 방법으로 각국의 법률 및 제도운영 실정을 조사 분석하였다.

공공대출권 제도가 확산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무료대출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국의 공공대출권 제도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 분석 등의 상황이론적분석(Contingency Theoretical Analysis)을 통해, 대여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지침을 공구하였다.

II.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운영의 현황분석

1. 도서관에서의 공정사용과 공공대출권의 등장

공정사용(Fair Use)이란 지식 공개념의 발상에서 지적소유물의 사회적 공익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접근권 및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주어진 배타적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일정한 조건의 면책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마련한 저작권법상의 이용자 권리를 말한다¹⁾. 공정사용이란 용어는 주로 미국의 저작권법에 명시되면서 보급된 개념으로, 각국은 저작권법상 배타적 권리의 제한이란 부분에서 비평과 논평, 시사보도, 교수, 학문,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제한된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고, 모든 국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정사용의 범위는 기대하기 어려울 만치, <표 1>에서와 같이 저작권의 제한 규정은 매우 다양하고도 독특하게 조문화되어 있다²⁾.

도서관에서의 공정사용이란 저작물 보급의 사회 공익적 목적에서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제한된 요건의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면책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를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이태리의 경우처럼 이를 ‘자유이용’의 범주에서 다루기도 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의 제한’이란 이름으로 명기하고 있다³⁾.

이에 반하여 공공대출권이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대여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도서관과 같은 비영리 기관에서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흔히 오해하듯이 도서관 공공대출에 대해 이용자가 갖는 대출권리가 아니라,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독점적 대여권리를 공공적 대

1)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3개정판. 서울: 나남출판, 1996. pp.71-76.

2) 한승헌, 위의 책. p.71.

3) 이순자. “공공대출권과 저작권.” 《계간저작권》 제 32호 (1995). pp.15-34.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

출에 까지 연장하여 인정한 결과이다.

〈표 1〉 각국의 저작권법상 도서관면책조항

국 가	도서관 면책의 범위	해당조항
미 국	-도서관에서 비상업적 목적 1부 -도서관의 보존용 복제 -도서관의 파손, 훼손, 분식, 도난 대치용 -도서관의 정간물 기사, 부분복사	제10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독 일	-도서관 면책조항이 없음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로 적용)	(제53조 ‘사적 이용 및 여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
일 본	-도서관이용자 요구에 부분 1부 제공 -도서관 자료보존용 -다른 도서관의 요구로 절판 대치용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이탈리아	-사적이용과 도서관업무용	제68조
스페인	-도서관에서 비영리 조사목적용	제37조
노르웨이	-도서관에서 복제물 만들 권리	제16조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의 복제물의 작성
덴마크	-도서관복제 1부 (단 디지털복제물은 공중에 대여될 수 없다.)	제16조 기록보존소, 도서관, 박물관에서의 복제
스웨덴	-도서관에의 보존, 완성, 연구목적 -안전상이유로 재제작, 발췌물 -독서용 기구사용목적	제16조 기록보존소 및 도서관내에서의 복제
핀란드	-관리상 안전을 위한 복제 -조사 연구목적으로 부분제공 -절판된 경우	제16조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의 복제 동법 시행령 제1조~제6조
한 국	-조사연구목적 부분제공 1부 -자체보존용, 절판 대치용 (컴퓨터를 통한 도서관간 복제 전송을 허용)	제28조 도서관들에서의 복제 등

공공대출권은 도서관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물의 판매수요 감소분만큼 저작자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주장의 요체이다⁴⁾. 도서관이 저작물을 구매한 후 여러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빌려가며 이용하는 경우, 대출이 독자들의 구매행위를 대신하게 되고, 그 결과 저작물의 판매가 감소하여 저작자에게 배당되는 인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정이 그 이유이다. 이를테면, 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이용에 대한 저작자의 보상청구권으로 보기도 한다⁵⁾.

지난 1992년 유럽공동체연합은 지적재산권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역내시장의 통합에 장애를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을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유럽공동체 지침(Council Directive 92/100/

4) 前田章夫. “公共貸出權(Public Lending Right)について : 第43回研究大會シンポジウム, 圖書館サービスと著作権.” 《圖書館界》 54卷2號 (2002), pp.59-60.
5) Stave, Thomas. "Public Lending Right: A History of the Idea". Library Trends, vol.29 no.4 (1981). pp.569-582.

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1992년 EU의 대여권 지침')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대여권 및 대출권 관련 지침을 제시하였다.

대여권 지침은 경제적 통합과정에서 역내시장 국가간의 저작권법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혼란과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회원 국가들에게 대여 및 대출에 대한 일종의 권장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시장참여자로서 각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경제공동체라는 이익사회에서 요구되는 대출권리에 대한 새로운 이용행태와 경쟁조건으로서, 1992년 EU의 대여권 지침은 다분히 시장원리를 존중한 경제적 사고에 기반한 듯, 공공부문의 대출에 대해서까지 적절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여권 지침 제1조에서는 '대여(Rental)'와 '대출(Lending)'을 구분하기를,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중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대여'라 하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및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대출'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같은 비영리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이라고 하며, 지침 제5조에서 회원국은 공공대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조건을 갖는 배타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출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가 손상되는 데 따르는 보상금을 자국문화진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회원국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

동 지침은 기왕에 공공대출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대출 이용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던 일부국가의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유럽전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저작권 환경을 유지하여 왔던 EU 역내 회원 국가들은 도서관 공정사용과 공공대출권에 대한 새삼스러운 개념을 수용해야 할 처지에 있다. 실제로 1992년 EU의 대여권 지침이 발표된 이후 공공대출권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없던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은, 이 제도의 실시와 보상의 범위 및 방식을 두고 관련자들 간 협의기구가 구성되어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보상 기준에 대한 의견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왕의 무료대출전통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일부 동유럽국가에서는 대여권 보상에 대한 거부감을 이유로 제도실시 자체를 회피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변형된 공공대출권 보상제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⁶⁾.

2. 공공대출권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

6) FEP(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 and IPA(the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A Comparative Study on Public Lending Right in the European Union." 1997. [cited 2002.9.19] (http://www.ipa-ue.org/copyright/copyright_pub/study_lending_eu.html).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서관 대출에 있어서까지 저작권 보상이 요구되는 경우, 무료서비스로 특징되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다는 점이다. 사서들은 도서관대출이 인류의 오랜 공익활동으로서 수세기에 걸쳐 제도화된 공공복리제도인데, 저작자에 대한 피해보상의 차원에서 새삼스럽게 공공대출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도서관측이 우려하는 것은,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상업적 판매에 의한 저작자의 경제적 보상기회가 도서관 대출로 인해 줄어들게 된다는 막연한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서들은 도서관의 대출이용이 저작물의 보다 넓은 독자층 형성에 기여하고, 열람기회제공과 전지로 구매 욕구를 촉진하며, 소량 제작되는 학술서적을 구매함으로써 양서출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서들은 도서관자료 대출이 직접적인 판매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바 없으며, 저작물 구입을 저해하기 보다는 저작물 유통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지난 1975년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 대출부의 책임자였던 우드(D.Wood)는, 당시 도서관대출증가로 구독률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잡지출판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잡지 대출이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일부 핵심잡지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히고, 평균적 잡지대출이용은 매우 드물게 제공되고 있음을 들어, 도서관대출이용의 증가가 잡지구독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찾아낼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⁸⁾.

사실상 도서관 대출이 증가하면 출판물의 구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은 출판업자들의 피해의식에서 비롯하고 있음이 이후 진행된 후속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1977년 영국의 국립도서관(BL)과 과학기술의학출판자실무그룹(STM Working Group)은 잡지구독과 도서관상호대차간의 상호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 250여 학술연구전문도서관들에 대한 상호대차와 잡지구독변화간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구독률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은 구독자의 관심저하와 재정적 압박이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고, 도서관대출로 인해 구독의 감소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는 도서관대출증가가 출판물의 구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출판사의 주장보다도 도서관 대출이 출판구매를 오히려 촉진할 수도 있다는 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⁹⁾.

캐나다에서 공공대출권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도서관계의 의견으로 제기된 논의를 검토해 보면,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는 도서관도 역시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도서관 사서들은 저작자들의 권리보상을 위한 제도로서 공공대출권 보상보다는

7) 이순자. 앞의 논문. pp.15-34.

8) Line, M.B. & Wood, D.N. "The Effect of a large-scale photocopying service on journal sales". Journal of Documentation, vol.31 no.4 (1975). pp.234-245.

9) Woodward, A.N. *Factors Affecting the Renewal of Periodical Subscriptions*. Aslib. London : Aslib, 1978.

보다 개선된 시스템으로서 문화적 기여도가 높은 저작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따라서 저작자들의 문화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유용한 척도로서 도서관 대출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대출이용마다 대여권 보상을 지불해야 된다는 발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도서관계의 중론으로 제기되었다¹⁰⁾.

실제로 캐나다에서 공공대출권제도 도입을 두고 1976년 캐나다도서관협회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은 공공대출권 제도시행에 대한 도서관계의 시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당시 결의안은 도서관대출 이용통계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공대출권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되, 저작자의 문화적 기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도서관대출 이용통계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취지의 사업에는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도서관 이용자 통계는 대중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자, 장서 수집을 주도하는 사서들의 일정한 문화적 역할이 개입된 것으로서 사회문화적 중요도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¹¹⁾.

다만, 도서관 제공자원의 주력이 인쇄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이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환경에 요구되는 저작권 관행에 대한 출판계의 주장에는 일부 관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도서관에서 이용되는 자료들이 주로 문헌자료인 까닭에 도서관에 적용되는 저작권은 전통적인 저작권 관행, 즉 책이 처음 판매될 때 책값이 지불되고 나면 이후로 그 책이 몇 번씩 이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무관하다는 '최초 판매원칙'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까지 편집저작권이 보호되는 WIPO 신협약 환경에서는 디지털 자료이용에 보다 엄격한 저작권 보호기술을 요구하고 보상의 방식 또한 비교적 부담스런 사용료 지불방식으로 이행하는 추세에 비추어, 문헌자료에 대한 도서관 공정사용의 허용범위는 디지털자료 이용이 확산될수록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정사용 범위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도서관 공정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하지 못하면, 기왕의 문헌자료 대출이용에 있어서까지 대여권 보상요구가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강화되는 셈이다.

이 경우 도서관 자료이용에 대한 보상 개념은, 이용자가 전적으로 지불하는 도서대여점의 상업적 대여(Rental)와는 구분되는 공공적 대출(Lending)의 개념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보상의 주체가 누구이든 공공적 정보유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용자 권리의 일환으로 주장되어야 한다. 도서관이란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공적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다. 저작권 보상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도서관 이용을 방어하는 것은, 전통적 역할검증을 통해 확인된 공동체 정보자원의 재분배 기능을 보장하는 국가지원방식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

10) Piternick, G. "Points of View of Librarians: Alternatives to PLR". *Library Trends*, vol.29 no.4 (1981). pp.627-640.

11) Piternick, G., 위의 논문. p.633.

3. 각국의 공공대출권 보상제도 운영현황

공공대출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각각 자신의 전통적 인습과 행정적 관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라마다 근거법령과, 보상범위, 대상도서관, 지불주체, 지불형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결국 공공대출권 제도를 실시하는 동기와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1979년 공공대출권법(Public Lending Right Act)을 마련할 때, 공공대출권에 대한 보상료 지불주체를 놓고, 무료원칙이라는 도서관의 오랜 전통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거센 저항이 있었으며, 제도정치권에 대한 총력적인 반대운동의 결과 정부 기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으로 귀착되었다. 영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법으로 공공대출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저작권법에서 공공대출권을 제도화 할 경우 저작권 국제 협약에 따라 자국 이외의 저작자 권리까지 보상해야 하는 부담을 벗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였다고 한다¹²⁾.

공공대출에 대한 보상은 저작자의 책이 실제 도서관에서 얼마나 대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01년도 영국 전체의 도서관대출이 약 4억3천만 책이었고, 공공대출권 관련 기준데이터는 전국의 표본도서관 29관에서 집계된 약4천1백만 책을 대상으로 계산하였으니 약10%의 실제 대출데이터를 근거로 대출건수를 추정한 셈이다.

2002년 1월에 발표된 공공대출권에 대한 보상액은 약520만 파운드(2002년 9월 현재 환율 1,827원으로 산정할 경우 약 95억 222만7천원)로 운영비 726,228파운드를 제외하고 4,503,593파운드가 저작자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대출에 대한 보상은 매해 7월부터 다음해 6월말 까지를 대상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해 2월에 지불된다 즉 2002년 2월 지급 분은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 까지 1년 동안의 대출건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저작자에게 배당되는 보상금은 최고 6,000파운드에서 최소 5파운드 범위에서 개인 저작물의 대출건수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배당금 지불방식은 정부에서 제공한 지원금 총액을 공공대출권 관리기구에 등록된 책의 총 대출 수로 나누어서 기준지급률을 계산하고, 이 기준 지급률을 대출건수에 곱해서 보상액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2002년 기준 지급률이 2.67펜스로 결정되었는데, 어느 작가의 책이 10만 번 대출되었다면, $2.67 \times 100,000 = 2,670$ 파운드가 개인에게 보상금으로 배당된다. 따라서 위에 지적한 5파운드 최저지불액을 만족시키려면, 최소 188회 이상이 대출되어야 5.02파운드를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기준에 따라 2002년 보상 수혜자는 모두 17,581명으로,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등록작가 34,220명 중 51.4%가 혜택을 보았다¹³⁾.

12) 이순자, 앞의 논문. pp.19-34.

13)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The. "Supplement to PLR Newsletter-January 2002". 2002.

〈표 2〉 영국 PLR 2002년 저자배당금

구 분	수 혜 인 원
5,000 ~ 6,000 파운드	169 명
2,500 ~ 4,999 파운드	272 명
1,000 ~ 2,499 파운드	584 명
500 ~ 999 파운드	750 명
100 ~ 499 파운드	3,400 명
5 ~ 99 파운드	12,406 명
총 4,503,593 파운드	합 17,581 명
대출 188건 이하 (보상없음)	11,571 명
대출없음 (보상없음)	5,068 명
등록 저작자	34,220 명

핀란드는 1963년 제정되어 1984년과 1994년 개정된 특별법으로 '저작자와 번역자를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한 핀란드 법(The Finnish Act of Grants and subsidies for Authors and Translators)'을 근거로 매년 전년도 공공도서관 구입예산의 10%를 저작물의 공공대출권 보상금으로 국가가 지원한다. 핀란드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특징은 보상금을 저작자들에게 일체 지불하지 않고, 전액을 저작자 및 번역자를 위한 공공복지기금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자국어로 저술된 저작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문화의 정체성을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할 만큼, 원래부터 자국어 저작물에 대한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대출권이 제도화된 나라이다. 예외적으로 자국어 저작물 중 과학적 연구논문과 교과서를 제외하고 있어서 특별히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인문학분야에 대한 창작물 지원성격이 강하다. 1999년 모두 1천3백8십만 핀란드마르크화(FIM)를 지원하여, 픽션분야에 90%, 논픽션분야에 10%를 지원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들 지원금은 창의적 문학작품에 76%, 번역물에 16%가 배당되었으며, 나머지 8%는 연로하거나 병든 원로 작가 및 번역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여 졌다¹⁴⁾.

일본은 도서관 공정사용에 대한 공공대출권 보상제도 실시가 시기상조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공공대출권이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며 조기도입을 주장하는 단체도 있어 정부 관련부처에서 국제적 동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저작권법 제26조 2항에서 대여권이 저작자의 고유의 권리임을 명기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 38조 4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도서관 등의 무료대출에는 저작자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하여, 공공적 목적의 대출이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정사용에 대한 일본 사회의 전통적 관심은, 도서관에 매우 유리하게 허용되어 왔으나, 유럽과의 저작권법 협약과 공공대출권 제도와 같은 영향을 받으면

[cited 2002.9.10] (<http://www.plr.uk.com/news/supplement.htm>).

14) Wigell-Ryynanen, Barbro. "Public Lending Right in Finland". *The Finnish Library Journal*. [2000]. [cited 2002.9.19] (<http://www.fla.fi/flj/wigell.htm>)

서, 최근 들어 공공적 대출에 대한 저작권 보상 문제가 공론으로 제기되고 있다¹⁵⁾.

2000년 12월 한 일본 작가가 월간지 「文藝春秋」에 투고한 기사를 통하여, 공공도서관이 저작물 발간 후 90일 정도까지는 신간에 대해 일체의 대출을 하지 말 것과, 복본을 3책까지만 허용하고 대출1회마다 통상 판매가액의 2 할을 이용료로 저작자 및 출판사에 보상할 것을 주장하며, 공공도서관에서의 신간대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제기하였다¹⁶⁾. 공공도서관의 대출봉사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로, 2001년 6월 15일에는 일본펜클럽이 성명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공공대출업무에 신중히 대처해 줄 것을 서면 요청하였고, 2002년 6월6일에는 사단법인 일본문예가협회에서 문부과학성장관에게 공공대출권제도의 도입을 건의하는 요망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¹⁷⁾.

일본에 있어서는 지난 WIPO 신조약 이후 문부성내 저작권심의회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복사 및 대출로 인한 저작권 보상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저작자 관련 단체에서의 적극적인 공공대출권 도입주장과, 도서관계의 반발 및 지불조건의 어려움 등 현실적 시행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주변국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대출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나라마다 운영실정이 매우 다양하여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렵다. 1995년 각국 공공대출권 관련조직 전문가들의 비공식 협의조직으로 구성된 공공대출권 국제협력망(PLR Int'l Network)의 홈페이지¹⁸⁾를 보면, 모두 15개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호주, 오지리,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페로아일랜드, 그린란드가 협력회원으로 이들은 지난 1995년 영국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이후로 격년으로, 1997년 덴마크, 1999년 캐나다, 2001년 호주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법률상으로 저작자의 대여권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26개국이며, 이중 저작자에 대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15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⁹⁾.

공공대출권 제도가 반드시 바람직한 저작권 보상시스템이 될 수는 없지만, '1992년 EU 대여권 지침'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EU회원국의 경우 대부분 자국별로 현실여건에 부합되는 공공대출권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공공대출권 제도를 시행중이거나 실시준비중이어서, 조만간 도서관에서의 대출이용에 대한 공공대출권 제도는 EU의 특징적 사회제도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이와

15) JLA著作権問題委員会. “図書館における著作権問題の今日的状況と課題 ; 特輯 図書館と著作権法の今日的状況と課題.” 《図書館雑誌》 96巻 5號 (2002). pp.298-301.

16) 林望. “図書館は無料貸本屋か.” 《文藝春秋》 2000年 12月(2000). pp.223-224.

17) 社団法人 日本文藝家協會. 文部省の文化廳への要望書 . (2002). [cited. 2002.9.21] (<http://www.bungeika.or.jp/statements/20020606.html>).

18) <http://www.plrinternational.com>.

19) Parker, Jim. "Public Lending Right in the United Kingdom". 2001. [cited 2002.10.9] (<http://www.plr.uk.com/publications/plrintheuk.htm>).

관련하여 EU당국은 최근 ‘1992년 대여권 지침’의 권장을 어기고 공공대출권제도 마련에 불성실한 포르투갈을 EU법정에 제소하여 대여권지침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2002년 9월 현재 공공대출권을 도입하고 있는 각국의 제도운영현황을 <표 3>에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각국의 공공대출권 도입현황²⁰⁾ (2002.9.23)

국가	도입	근거법령	대상도서관	대상자료	지불대상자	지불산정 기준	권리금 지불자	비고
네델란드	1987 (1972)	저작권법	공공도서관	도서	자국어저작자 (저자70%,출판사30%)	소장책수	정부 3/1, 도서관2/3	5~10%사회기금 때고 개인별 실적배당
노르웨이	1947	공공도서관법	공공도서관	도서 및 비도서자료	개인지불없음. 저작자연금과 복지기금으로	소장책수	정부 (공공도서관도서구입비5%상당액)	전액 사회기금
뉴질랜드	1973		공공도서관	도서관 50부이상 소장 (교과서 전집,잡지 제외)		소장책수	정부	
덴마크	1982 개정 1989 개정	공공도서관법	공공도서관	도서 및 비도서자료	저작자, 번역자, 사망저자의 피부양자, 작곡가, 사진가, 화가	소장책수	정부 (공공도서관도서구입비6%상당)	개인지불
독일	1973	저작권법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국립도서관	저작권이 종료되지 않은 저작물	불우저작자기금 10%, 사회보장기금45%, 개별지급 45% (저자 70%, 출판사30%)	대출책수	도서관 (자치단체)	영국,오지리, 스위스 저작자도 보상
스웨덴	1954	저작권법	전산화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도서	자국민 및 스웨덴어 문예작가, 삽화가,번역자	대출책수	정부	스웨덴저작자기금에 지불
아이슬랜드	1968	공공도서관법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도서	자국어 저작자,번역자, 삽화가, 사진가,작곡가,작가의 피부양자	소장책수, 대출책수	정부	공공도서관연간조정금의 10%상당액
영국	1979	공공대출권법	공공도서관	도서	자국 및 EU작가	대출책수	정부	
오지리	1977	저작권법		도서			지방정부	
일본	1984	저작권법	도서관	영상자료				
캐나다	1986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도서	저작자,번역자,삽화가	소장책수	정부	
핀란드	1995	저작권법	공공도서관	도서 (교과서, 논문 제외)	복수 저작자,번역자, 경제관련 고령저작자,번역자	소장책수	정부	공공도서관도서구입비10%상당액
호주	1985	공공대출권법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50권이상 소장 도서	저작자,출판사, 제외호주인	소장책수	정부	Educational Lending Right 시행
체코공화국	1994	저작권법	공중에 개방되는 모든 도서관	음악자료	음악저자	연간계약	도서관	도서 제외
라트비아	1999	의논중	공공도서관	도서	자국저자	대출책수	정부	전산화 0.01% 로 기술문제
리투아니아	1999	저작권법	공공도서관	도서	미정	미정	정부	전산화미비로 기술적 예로
슬로바키아	1997	저작권법	모든 도서관			대출책수	(도서관)	
슬로베니아		저작권법	공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도서관	음악자료, 시청각자료		소장 자료수	도서관	도서 제외

20) 마에다 아끼오(前田章夫)가 작성한 도표의 형식을 따라 조사내용을 추가함.

Ⅲ.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운영의 특징과 대응방안

1.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운영의 특징

2002년 현재 공공대출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 보상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공대출권 보상제도 운영실정을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적인 현상을 요약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²¹⁾.

첫째, 모두가 공공대출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나라마다 운영 실정은 대단히 다양하다는 점이다. 영국과 캐나다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라고 하지만,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도서관의 로열티(Library Royalty, Bibliothekstantiem)’, 아이슬란드에서는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 Hofundarettur)’라고 하는 등, 당초 운영목적에 따라 제도의 이름도 다양하다.

둘째, 공공대출권에 대한 근거법령으로서 북유럽에서는 공공도서관법 혹은 도서관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독일은 저작권법에서 공공대출권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특별법으로서 공공대출권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캐나다와 이스라엘은 행정명령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1992년 EU지침 이후 회원국의 공공대출권 보상의무가 지워진 EU 국가들로서는 저작권법의 범위에서 공공대출권을 수용하고 있다.

셋째, 공공대출권을 적용하는 도서관은 거의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스웨덴과 캐나다, 호주의 경우와 같이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포함하는 나라도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는 도서산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대출권(Educational Lending Right)이라고 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별도의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자국민 저작활동지원에 특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공공대출권 대상 자료로는 도서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슬로베니아와 일본의 경우처럼 영상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덴마크에서는 시각장애인용 녹음자료, 북구 여러 나라에서는 사진 등의 비도서 자료, 핀란드에서는 우수만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대출권 제도실시 초기에는 도서에 대한 보상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점차 진산환경의 지원으로 이용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장래에는 비도서자료와 디지털 형식의 모든 도서관자료에 까지 보상범위의 확대가 예상된다.

다섯째, 공공대출권에 대한 보상대상은 국가마다 다양한데, 영국처럼 저작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덴마크처럼 사망저작자의 배우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나라도 있다. 독일, 호주, 네덜란드의 경우는 저자와 출판자에게 일정비율을 정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직

21) 前田章夫. “公共貸出權(Public Lending Right)について : 第43回研究大會シンポジウム, 圖書館サービスと著作権.” 《圖書館界》 54卷2號 (2002), pp.58-65.

접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네덜란드와 달리 노르웨이는 개인에게 일절 지급하지 않고 전액 기금으로 저작자들의 연금과 복지에 쓰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민에게만 혜택을 부여하지만, 영국과 독일처럼 등록 외국인에게 지급하기도 한다. 공공대출권 도입동기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기에 자국내 합의수준에 따라 기금의 사용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공공대출권 지불기준도 복구 제국처럼 도서관 소장권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영국처럼 도서관 대출권수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로 나뉘어 지고 있다. 지불보상 기준을 산정할 때 어떤 방식을 정하느냐에 따라 기금운영의 목적에 차이가 있게 된다. 대출권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통계 데이터를 집계하는 방식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용실적을 보상근거로 함으로써 저작자 개인에 대한 보상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이에 비교해서 소장권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대출통계분석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면서, 저작물의 포괄적인 이용가능성을 기초로 함으로써, 도서관자료로 구입된 많은 저작물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구 및 학술적 성격의 우수저작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진흥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일곱째, 공공대출권의 보상 재원은 대부분이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나라도 있고, 저작권법에 기초하고 있는 독일처럼 도서관과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나라도 있다.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금의 산출은 해마다 협의하여 산정하지만, 덴마크와 스웨덴처럼 공공도서관 도서관구입비 총액의 몇%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나라도 있다. 사실 공공대출에 대한 보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도서관으로서의 봉사의 명분과 업무수행에 있어 큰 차이를 맞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같이 정부가 일종의 문예진흥기금 형식의 저작자 대출권 보상금을 부담하게 되면, 도서관으로서의 재정적인 보상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오랜 무료전통을 실질적으로 고수하게 된다. 그러나 도서관에 공공대출에 대한 보상금 지불의무가 지워 진다면, 이는 그간의 도서관 공정사용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추가부담 또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불방식이기도 하다.

2. 도서관에서의 공정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방안

도서관의 공공대출에까지 적절한 보상을 권장하는 새로운 저작권 제도는 유럽연합 내 현저히 열악한 도서관환경으로 평가되는 동유럽국가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강요되고 있다²²⁾. WIPO와 TRIPs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 운영에 영향을 주었던 국제협정이

22) Tammaru, K., T. Haavisto. "Public Lending Righ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66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Conference Proceedings". *IFLANET*. 2000. [cited 2002.9.19] (<http://www.ifla.org/IV/ifla66/papers/043-104e.htm>).

우리의 저작권 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곧바로 우리의 도서관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현재 공공대출권은 지적재산권 분쟁조정체의 일환으로 유럽연합과 일부의 서양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 국제통상의 경제적 교역조건으로서 저작자의 대여권에 대한 제도적 보상이 국내도서관 공공대출에까지 연장되는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유비무환의 현실적 대응과제를 예상하였다.

첫째 보상주체의 국가기금화가 절대적 조건이다. 도서관 무료이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저작권자에게 대출이용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도서관이용에 대한 저작권 보상을 이용자나 도서관이 아닌 국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불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국가가 저작자의 공공대출권 보상을 부담하는 것만이 공공대출권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정보이용료에 대한 사적 부담 없이 시민의 자유로운 도서관 이용을 보장하는 길이다. 공공대출권이 저작자의 배타적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해 도서관 공정사용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결국 저작권법이 당초 목표로 하는 저작권보호와 지식보급이라는 양면적 조화를 스스로 부정하고, 저작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적 상거래 규범으로 전락하게 됨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영역의 정보유통을 자유롭게 보장하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공공대출권을 인정하더라도 도서관에서의 공정사용에 대한 명분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며, 이로 인한 저작자의 대여권 보상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적재산권 관련 시장질서의 사적이익과 국가개입에 의한 공공적 정보유통을 함께 보장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대출권에 대한 보상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차적인 업무가 도서관 이용자서비스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상제도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 도서관에서 제공해야 할 이용통계 데이터의 집계방식이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상시스템에 동원되는 도서관 이용통계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에 대한 보상의 근거로 수집되는 통계자료는 영국의 예에서와 같이 저작물별 대출통계와 같은 건별 집계 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소장정보나 자료구입비를 근거로 보상되는 북유럽의 방식을 권하고 싶다. 사실상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자료수집에 적지 않은 손실비용이 요구된다면, 대여권 보상이라는 당초취지보다는 제도 운영에 따른 경상비용의 부담으로 저작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효과가 감소되리라는 점을 감안해서 생각한 결과이다. 만일 대출보상에 대한 근거로 영국식의 대출통계를 필요로 할 때라도, 가능하면 이용통계의 집계는 보상업무를 책임지는 제삼의 관리단체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납본관리 및 저작권관리시스템과 표본대상 도서관의 대출시스템을 연계하는 공공대출권 보상관리시스템이 도서관 업무에 별도의 가중업무로 주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연계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도서관에서 대출이나 열람 등에 보상이 요구되는 경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이용

에 대한 보상은 저작자 개개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도서관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저작물은 사전에 저작자의 자발적 신고로 등록된 저작물을 우선으로 하되, 이들 자발적 신고자 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도서관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괄적 법정허락제도를 통한 공탁형식으로 저작자의 사용허락을 유예하도록 해야 한다²³⁾. 국회도서관의 디지털자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에서 확인되었듯이, 도서관보유자원에 대해 일일이 개별적인 저작권 허락을 얻는다는 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므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공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서관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상의 문제는 법적허락제도를 통한 일괄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의 법정허락 관련 규정에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위한 별도의 보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상의 범위는 일차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단행본 도서를 시작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유럽에서 공공대출권 운영의 당초취지는 자국어 저작물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실시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제도운영의 목적은 저작권 보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어화진흥을 위한 자국어 저작물을 독려하는 경제적 보상시스템 구축을 본질적 동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범위를 우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행본을 대상으로 문화적 보상시스템으로 실시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의 자료이용에 대한 권리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칫 연속간행물의 기사,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공정사용의 범위를 포기하고, 상업적 정보유통만을 공인하는 정책상 파행을 피할 수 없다. 단행본을 포함하는 도서관자료로서, 학술지,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경우는 디지털 출판물의 형식으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고, 이들 디지털자료들은 정보유통형식의 특성상 이용료 개념의 보상으로 저작권의 보상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행본 이외의 범위로 공공대출권 보상을 확대하는 것은, 추후 대여권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행국의 시행요류를 참고하여 점진적인 자세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자료 유통경로가 인터넷 채널을 통한 상업적 벤더들에 의해 주도되어 간다면, 디지털자원의 구매와 이용에 대한 저작권 보상방식은 인쇄매체의 그것과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전자책, 전자저널 디지털형식으로 축적된 자료의 대부분은 상업적 채널을 통한 유료이용의 방식으로 도서관에 제공되고 있으며, 저자들이 대여권 보상을 주장하기 이전에 이용과정에서 보상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결국 공공대출권의 보상제도는 그 성격상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유효한 한시적 보상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3) 김윤명, 정준민.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情報管理學會誌》 19권2호 (2002). pp.181-201.

IV. 결 론

결국 공공대출권에 대한 보상제도를 접근할 때 유의할 점은, 당초부터 저작자의 대여권 보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문화적 보상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기본이념인 자유로운 접근과 무료이용의 신념을 존중하면서도 저작자 개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화를 구현하는 것은 공공대출권 취지의 핵심 사안이며, 이 과제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해법은 현실적으로 문화진흥기금 형식의 재정지원을 통한 국가의 개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유럽의 공공대출권 보상제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가운 현상은 아니다. 이는 우리의 저작권법이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등에서 유지되고 있는 도서관 공정사용에 대한 전통적 관용정책에 적지 않은 저항과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의 국내 여건에 비추어 공공대출권 보상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에는 필자 역시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도서관활동과 관련한 해외의 저작권동향이 경제우선의 시장질서에 귀속되고, 급속히 세계시장화 하는 교역조건 아래서 우리의 도서관만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동향에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 김윤명, 정준민.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情報管理學會誌》 19권2호 (2002). pp.181-201.
- 대한출판문화협회. 『2001 한국출판연감 자료편』. 서울: 동협회 2001. pp.290-292.
- 社団法人 日本文藝家協會. 文部省の文化廳への要望書. (2002). [cited. 2002.9.21] (<http://www.bungeika.or.jp/statements/20020606.html>)
- 林望. “圖書館は無料貸本屋か.” 《文藝春秋》 2000年 12月(2000). pp.223-224.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독일 일본 저작권법(1988). 『저작권관계자료집, 24』. 서울: 동위원회, 1998. ISBN89-86723-06-9.
- 前田章夫. “公共貸出權(Public Lending Right)について : 第43回研究大會シンポジウム, 圖書館サービスと著作権.” 《圖書館界》 54卷2號 (2002), pp.58-65.
- 오병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디지털은 자유다』. ILeft, 2002. [cited 2002.9.19] (<http://www.ipleft.or.kr/oldIndex.html>).

- 이순자. “저작권보호와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정사용에 대한 연구.” 《國會圖書館報》 제25권 제5호 (1988). pp.23-29.
- 이순자. “공공대출권과 저작권.” 《계간저작권》 제 32호 (1995). pp.15-34.
-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3개정판. 서울: 나남출판, 1996.
- FEP(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 and IPA(the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A Comparative Study on Public Lending Right in the European Union.” 1997. [cited 2002.9.19]
(http://www.ipa-uie.org/copyright/copyright_pub/study_lending_eu.html)
- Holderness, Mike. “The Librarian of Babel: for a Public Reading Right”. *Ariadne*, 11 (Sep. 1997). [cited 2002.9.19] (<http://www.ariadne.ac.uk/issue11/babel/>)
- JLA著作権問題委員會. “圖書館における著作権問題の今日的状況と課題 ; 特輯 圖書館と著作権法の今日的状況と課題.” 《圖書館雜誌》 96卷5號 (2002). pp.298-301.
- Line, M.B. & Wood, D.N. “The Effect of a large-scale photocopying service on journal sales”. *Journal of Documentation*, vol.31 no.4 (1975). pp.234-245.
- Parker, Jim. “Public Lending Right in the United Kingdom”. 2001. [cited 2002.10.9]
(<http://www.plr.uk.com/publications/plrintheuk.htm>)
- Piternick, G. “Points of View of Librarians: Alternatives to PLR”. *Library Trends*, vol.29 no.4 (1981). pp.627-640.
-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The. “Supplement to PLR Newsletter-January 2002”. 2002. [cited 2002.9.10]
(<http://www.plr.uk.com/news/supplement.htm>)
- Stave, Thomas. “Public Lending Right: A History of the Idea”. *Library Trends*, vol.29 no.4 (1981). pp.569-582.
- Tammaru, K., T. Haavisto. “Public Lending Righ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66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Conference Proceedings”. *IFLANET*. 2000. [cited 2002.9.19] (<http://www.ifla.org/IV/ifla66/papers/043-104e.htm>)
- Wigell-Ryynanen, Barbro. “Public Lending Right in Finland”. *The Finnish Library Journal*. [2000]. [cited 2002.9.19] (<http://www.fla.fi/flj/wigell.htm>)
- Woodward, A.N. *Factors Affecting the Renewal of Periodical Subscriptions*. Aslib. London : Aslib, 1978.